

제 안 설 명 서

-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3708) -

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3708번

「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주택임대차
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

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
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조정절차의 개시시기를 앞당기며,
조정성립 요건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등
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